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18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용수, 손석철 의원

3. 개정이유

-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해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악취 등이 심한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조제5항)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의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로 규정하도록 개정(별표 제5호)

5.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0m이내 지역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단,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3.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마을 소규모급수 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
4.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
5.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50m이내 지역(단,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1,000m 이내)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8.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u>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